

구미시 주차공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발의연월일	2024. . .
발 의 자	이정희 의원 외 5인

구미시 주차공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정희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	--

발의연월일: 2024. . .

발 의 자: 이정희·김원섭·김재우·김정도
김춘남·추은희 의원(6인)

1. 제안이유

이용률이 저조한 시간대에 비어있는 학교, 종교시설 등 건축물 부설 및 야외주차장을 주차장소가 필요한 시민들에게 공유하여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2조)
- 나. 다른 조례와의 관계 및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제4조)
- 다. 공유주차장 지정 및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5조~제6조)
- 라. 공유주차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7조~제8조)
- 마. 주차공유 활성화 사업과 지도 및 감독에 관한 사항(안 제9조~제10조)
- 바. 주차공유 사업의 운영 현황 공개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3. 조례안: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1) 「주차장법」 제19조
- 2) 「주차장법 시행령」 제11조의2
- 3)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조

나. 부서검토: 교통정책과 의견제출(붙임)

구미시 주차공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미시의 주차장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주택가, 상업지역 등의 주차수요가 많은 지역 인근 주차장을 주간 또는 야간에 일정 시간 동안 개방함으로써 지역의 불법주차 감소 및 원활한 교통소통과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 환경 조성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차공유”란 주차공간을 사용할 권한을 가진 자가 사용하지 않는 시간대에 다른 사람에게 주차공간의 사용을 공유하는 것을 말한다.
2. “관리주체”란 제7조에 따라 지정된 공유주차장을 관리 및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주차공유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시장의 책무) ①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차공유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개발하여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② 시장은 주차공유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공유주차장의 지정) ① 시장은 주차공유사업구역의 주차수요가

많은 지역에 있는 민간건축물 부설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을 공유주차장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유주차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1. 주차장 30면 이상을 제공할 것
2. 평일과 주말 정기적으로 공유할 것. 다만, 공유 시간을 정하는 경우 사전에 시장과 협의해야 한다.

③ 시장은 공유주차장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주차장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공유주차장 운영 및 관리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약의 기간은 최소 2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제6조(공유주차장에 대한 보조금 지원) ① 시장은 주차공유 사업에 참여하는 개인·법인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으며, 보조금액은 최대 2,00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② 제1항 지원을 위한 보조금의 신청·지급·정산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구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공유주차장의 관리 및 운영) ① 공유주차장의 관리주체는 공유주차장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안내표지 설치 등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공유주차장의 안내표지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설치
해야 하며, 그 규격 등은 식별의 편리성, 주차장의 위치, 규모, 형태 및
주변시설물의 배치상태 등을 고려하여 주차장을 설치하는 사람 또는
그 관리의 책임이 있는 사람이 정한다.

1. 주차장의 이용시간 및 이용요금
2. 주차의 방법 및 이용시간의 제한에 관한 사항
3. 주차장 이용자의 준수사항
4. 그 밖의 주의사항

③ 공유주차장을 이용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
다.

1. 주차장 내에서는 서행하고 경음기 사용을 자제할 것
2. 주차장 내에 인화물질 또는 위험물을 반입하지 않을 것
3. 차량을 주차구획선 내에 주차하고 개방시간을 준수할 것
4. 차량을 이용하여 영업행위를 하지 않을 것

④ 공유주차장의 관리주체는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 주차를 거부하거나 출차를 요구할 수 있다.

1. 대형차량 등 자동차 구조상 주차장 이용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
는 차량
2. 주차장의 구조 및 설치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이용자가 주차장 관리규정을 지키지 않거나 주차장 내 질서를 문란
하게 하는 경우

4. 이용자가 3일 이상 장기 주차하는 경우
5. 그 밖에 이용자가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

제8조(공유주차장 지정 취소 및 보조금 반환)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라 지정한 공유주차장의 관리주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공유주차장의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
2. 협약 기간에 공유주차장의 용도를 변경한 경우
3. 이 조례에 따른 행정조치를 위반하거나 이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협약을 위반한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공유주차장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해당 공유주차장에 지급된 보조금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제9조(주차공유 활성화 사업) 시장은 주차공유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주차공유에 관한 인식개선 등을 위한 홍보
2. 주차공유 참여자 혜택 제공
3. 그 밖에 주차공유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지도 및 감독) 시장은 공유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주차장의 관리·운영자에게 그 업무에 관

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에게 공유주차장의 운영 점검 및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주차공유 운영 현황의 공개) 시장은 주차공유 사업의 운영 현황을 시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인정보 및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 「주차장법」

제19조(부설주차장의 설치·지정) ①~⑫ (생략)

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의 부설주차장을 일반이 이용할 수 있는 개방주차장(이하 “개방주차장”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⑭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개방주차장을 지정하기 위하여 그 시설물을 관리하는 자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⑮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3항에 따라 지정된 개방주차장의 위치, 개방시간 및 주차요금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⑯ 개방주차장의 지정에 필요한 절차, 개방시간, 보조금의 지원,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주차장법 시행령」

제11조의2(개방주차장 지정 대상 시설물) 법 제19조제1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

설물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로서 시설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가 부설주차장을 개방주차장으로 지정하는 데 동의한 시설물

가. 주차난이 심각한 도심·주택가 등에 위치한 시설물로서 판매시설, 문화시설, 체육시설 등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물

나. 개방주차장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 시설물로서 시·군 또는 구의 조례에서 정하는 시설물

2. 시설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가 부설주차장을 개방주차장으로 지정해줄 것을 요청하는 시설물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조(안전표지) ①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안전표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주의표지

도로상태가 위험하거나 도로 또는 그 부근에 위험물이 있는 경우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할 수 있도록 이를 도로사용자에게 알리는 표지

2. 규제표지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각종 제한·금지 등의 규제를 하는 경우에 이를 도로사용자에게 알리는 표지

3. 지시표지

도로의 통행방법·통행구분 등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는 경우에 도로사용자가 이에 따르도록 알리는 표지

4. 보조표지

주의표지·규제표지 또는 지시표지의 주기능을 보충하여 도로사용자에게 알리는 표지

5. 노면표시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각종 주의·규제·지시 등의 내용을 노면에 기호·문자 또는 선으로 도로사용자에게 알리는 표지

② 제1항에 따른 안전표지의 종류, 만드는 방식 및 설치·관리기준은 별표 6과 같다.

검 토 의 견 서

부서명: 교통정책과

조 례 명

구미시 주차공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검토 사항

- 근거 법령
 - 「주차장법」 제19조
 - 「주차장법 시행령」 제11조의2

□ 주요 사항

- 조례의 목적,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2조)
- 다른 조례와의 관계 및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제4조)
- 공유주차장 지정 및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5조~제6조)
- 공유주차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7조~제8조)
- 주차공유 활성화 사업과 지도 및 감독에 관한 사항(안 제9조~제10조)
- 주차공유 사업의 운영 현황 공개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 검토 결과

- 대구광역시 등 광역시에서 활발하게 시행되고 있는 주차공유제의 근거 조례로, 활용하지 않는 시간대의 주차장을 시민들에게 개방함으로써 인근 주차환경 개선에 이바지할 것으로 사료됨
- 다만, 의미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다음 내용의 수정 요청
 - 제5조 1항
 - (기 존) 시장은 주차공유사업구역의 주차수요가 많은 지역에 있는 민간건축물 부설주차장을 공유주차장으로 지정할 수 있다.
 - (변 경) 시장은 주차공유사업구역의 주차수요가 많은 지역에 있는 민간건축물 부설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을 공유주차장으로 지정할 수 있다.

□ 조례 제(개)정에 따른 향후

○ 기대효과 : 교회, 학교 등 이용 시간이 명확한 시설물의 주차공간을
 시민들에게 공유하여 주차환경 개선에 기여

○ 소요예산 : 2024년 기편성된 예산

※ 비용추계서 작성 제외대상*

- 기존 예산에 따라 이미 발생하고 있는 비용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 「2023년도 법제업무편람」 p.50 비용추계서 첨부기준 참조